



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

【결정사안】

양평 적대세력 사건은 1950년 9월 26일에서 30일 경(음력 8월 15일에서 19일) 양평군 양평면·용문면·옥천면·강하면·단월면 주민 61명이 후퇴하던 인민군과 정치보위부 내무서원에 의해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숙칭 떠드령산 혹은 경비행장)에서 집단 피살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1950년 9월 22일부터 26일 새벽사이에 연행되어 1차로 각 면의 지서나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9월 26일을 전후해서 양평면 내무서와 그 인근 건물(양평경찰서, 양평 내무서 옆 농협창고)에 집결되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들은 두 명씩 양손을 허리띠나 철사로 묶인 채 사건 현장인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으로 끌려간 후 총살되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국군이 양평을 수복한 10월 1일 이후에 유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2. 조사결과, 진술과 문헌에서 확인한 희생자 중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대상자는 강응수(마-36), 김재근(마-1004), 김복현(마-1284), 김영원(마-1285), 김문수(마-1528), 서정길(마-1957), 서정익(마-2194), 김득수(마-2255), 조성만(마-2256), 조인희(마-2759), 조성준(마-2780), 한영석(마-2787), 조한무(마-3436), 한동규(마-3437), 조한준(마-3438), 양재호(마-3665), 조성옥(마-3746), 조준호(마-3841), 홍신관(마-3968), 김진수(마-4085), 김각선(마-5556), 이영희(마-5683), 서정화(마-6322), 홍현관(마-6639), 신재필(마-7040), 함재옥(마-7407), 이석중(마-7408), 이병천(마-8064) 등 28명이며,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로는 조한중, 김창복, 최재의, 이만기, 이재성, 이병준, 한준교, 이병렬, 조성구, 조진원, 이봉춘, 박영철, 박원식, 이종만, 이재봉, 이길수, 김영집, 정문섭, 이태영, 김동진, 이종구, 이홍재, 이종하, 이역수, 이명수, 이선재, 남창우, 나수경, 이지훈, 이지묵, 한동익, 신상진, 최재수 등 33명이 확인되었다.

3. 확인된 희생자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용문면, 옥천면, 강하면, 단월면 마을 주민들이다. 모두 남성이고, 20~4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들 중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도 7명이 있었다.

4. 피해의 주된 이유는 이들이 UN군과 국군에 협력했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학살이 북한 정치보위부에 의해 UN군과 국군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직후에 발생한 점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우익단체원, 혹은 부농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5. 가해주체는 신청인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인민군, 내무서원이 지목되고 있으나, 가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의 증언이 없으며, 자료상의 내용도 사건 발생 후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그(들)의 군적 또는 기관소속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전 문】

【사 건】 마-36 외 31건 양평 적대세력 사건

【신청인】 강대홍 외 31명

【결정일】 2007. 07. 0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 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강대홍 등 31명은 2005년 12월 5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인민군 퇴각시기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총 3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¹⁾ 사건은 신청서(사건명, 사건번호 부여) 분류에 따라 검토 보고서 작성, 조사개시결정 및 결정 통지, 조사계획의 수립, 사건 조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실규명신청서를 기초로 사건명은 양평(지역명)+적대세력사건으로 표기하였고, 제7차 소위원회('06.4.25, 11건 병합), 제10차 소위원회('06.5.30, 3건 병합), 제17차 소위원회

1) 신청인 조민희는 두 건의 사건(마-3745, 마-3746)을 접수하였다.



(’06.9.29, 9건 병합), 제25차 소위원회(’07.2.20, 9건 병합) 심의·의결에 따라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²⁾

〈표 1〉 신청인 접수 및 처리 현황

번호	접수 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피해자	조사개시일
1	’05. 12. 05.	36	강대흥	강응수	’06. 04. 25.
2	’06. 02. 06.	1004	김태형	김재근	’06. 04. 25.
3	’06. 02. 15.	1284	김영의	김복현	’06. 04. 25.
4	’06. 02. 15.	1285	김항수	김영원	’06. 04. 25.
5	’06. 02. 22.	1528	김용태	김문수	’06. 04. 25.
6	’06. 03. 03.	1957	서성석	서정길	’06. 04. 25.
7	’06. 03. 08.	2194	서금석	서정익	’06. 04. 25.
8	’06. 03. 09.	2255	김명수	김득수	’06. 04. 25.
9	’06. 03. 09.	2256	조선희	조성만	’06. 04. 25.
10	’06. 03. 27.	2759	조흥희	조인희	’06. 04. 25.
11	’06. 03. 31.	2780	조찬희	조성준	’06. 04. 25.
12	’06. 04. 03.	2787	한천석	한영석	’06. 09. 29.
13	’06. 05. 08.	3436	조한현	조한무	’06. 05. 30.
14	’06. 05. 08.	3437	한동하	한동구	’06. 09. 29.
15	’06. 05. 08.	3438	조문상	조한준	’06. 05. 30.
16	’06. 05. 08.	3439	조항섭	조의상	’06. 05. 30.
17	’06. 05. 24.	3665	양승무	양재호	’06. 09. 29.
18	’06. 05. 29.	3745	조민희	조성완	’06. 09. 29.
19	’06. 05. 29.	3746	조민희	조성욱	’06. 09. 29.
20	’06. 06. 07.	3841	조한일	조준호	’06. 09. 29.
21	’06. 06. 16.	3958	홍대권	홍신관	’06. 09. 29.
22	’06. 06. 30.	4085	김용균	김진수	’06. 09. 29.
23	’06. 08. 11.	4741	김경식	김천식	’06. 09. 29.

2) 병합조사는 사건 발생장소가 동일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번호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피해자	조사개시일
24	'06. 10. 10.	5556	김인선	김각선	'07. 02. 20.
25	'06. 10. 16.	5683	이재완	이영희	'07. 02. 20.
26	'06. 10. 26.	6322	서기석	서정화	'07. 02. 20.
27	'06. 11. 08.	6639	홍대길	홍현관	'07. 02. 20.
28	'06. 11. 21.	7040	신재천	신재필	'07. 02. 20.
29	'06. 11. 23.	7407	함민자	함재옥	'07. 02. 20.
30	'06. 11. 23.	7408	이순평	이석종	'07. 02. 20.
31	'06. 11. 29.	8064	이호선	이병천	'07. 02. 20.
32	'06. 11. 30.	10290	이윤래	이향래	'07. 02. 20.

2. 신청 내용

양평적대세력사건은 1950년 9월 26일에서 30일 경(음력 8월 15일에서 19일) 양평군³⁾ 양평면·용문면·옥천면·강상면·강하면·양서면·양동면·서중면·단월면·청운면·지제면 등 11면⁴⁾에서 주민 약 600여명이 후퇴하던 인민군과 정치보위부 내무서원에 의해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속칭 떠드르산 혹은 경비행장)에서 희생당했다고, 강대홍 등 31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필요성

1. 조사의 근거

양평적대세력사건은 2005년 12월 5일 강대홍 등 31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본법 제2조⁵⁾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개시결정을 하였다.

3) 양평군은 1908년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친 군이다. 1963년 여주군 개군면이 편입되고 1973년 서중면의 일부가 가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79년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양평군지』, 1991, 4쪽. 한국전쟁시기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양평면,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중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제면, 용문면 등 11면으로 이루어졌다.

4) 양평군 현지도.

5)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 제5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에 관한 조사.



2. 조사의 필요성

본 사건은 1950년 9월 말 경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 후인 1951년 6월 23일 치안국장이 작성하여 내무부차관에게 보고한 「학살사건조사보고의 건」⁶⁾을 근거로, 1952년 5월 31일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 양평지역 피살자가 등재되는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그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생존자와 유족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1985년 6월 25일 학살 장소 근처에 ‘위령비’⁷⁾가 건립되었고,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위령제가 매년 10월 말에 열리고 있다.

또한 2005년 양평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양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평전란사략」(양평문화원, 2005.12)이 발간되었고, 이 보고서에는 한국전쟁 당시 양평지역 피살자 신원과 관련자 증언이 수록되어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사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III. 조사의 방법

크게 문헌자료조사,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구체적 순서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지역 상황과 사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실규명대상자 개개인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가해주체를 규명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청인, 참고인, 조사대상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내에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고령 등의 이유로 진실화해위원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

기존의 사건 관련문서, 문헌 자료, 기관자료와 새로 확보된 미국 국립 문서보관소(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자료는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유족회 및 유족 기타 사회단체의 수집된 자료와 상호 대조·분석을 통해 실제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다.⁸⁾

6) 집단희생조사국 조사1팀내 자료팀의 『인사비밀 관계서류철』(집단1팀-0521, '07.01.05)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7) 6·25 피학살자 위령탑 사진 : 별첨1.

8) 세부 조사계획.

1. 진술 청취

2006년 5월 24일부터 2007년 4월 5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양평군청 회의실·용문면사무소·신청인의 자택·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실에서 신청인 31명과 참고인 6명의 진술 청취가 이루어졌다. 진술 조서는 신청인·참고인이 진술 후 그 내용을 진술자가 확인하고, 조사관과 같이 간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신청인 진술은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형태, 규모, 피해자의 이동 경로 등 피해 사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과 가해자 파악을 위한 당시 정황 확인에 그 중점을 두고 청취하였다. 참고인 진술은 생존자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신청인 진술 조서 작성상황

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피해자	진술일	진술장소
1	36	강대흥	강응수	'06.06.20.	위원회조사실
2	1004	김태형	김재근	'06.06.08.	양평군청 회의실
3	1284	김영익	김복현	'06.06.21.	위원회조사실
4	1285	김항수	김영원	'06.06.20.	위원회조사실
5	1528	김용태	김문수	'06.06.22.	위원회조사실
6	1957	서성석	서정길	'06.05.25.	양평군청 회의실
7	2194	서공석	서정익	'06.05.25.	양평군청 회의실
8	2255	김명수	김득수	'06.06.27.	신청인 자택
9	2256	조선희	조성만	'06.05.25.	양평군청 회의실
10	2759	조흥희	조인희	'06.05.24.	우리 한의원 사무실
11	2780	조찬희	조성준	'06.05.24.	우리 한의원 사무실
12	2787	한천석	한영석	'06.05.24.	신청인 자택
13	3436	조한현	조한무	'06.07.12.	용문면 면사무소
14	3437	한동하	한동구	'06.07.12.	용문면 면사무소
15	3438	조문상	조한준	'06.08.17.	위원회조사실
16	3439	조항섭	조의상	'06.07.12.	용문면 면사무소
17	3665	양승무	양재호	'06.07.12.	용문면 면사무소



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피해자	진술일	진술장소
18	3745	조민희	조성완	'06.07.25.	위원회조사실
19	3746	조민희	조성옥	'06.07.25.	위원회조사실
20	3841	조한일	조준호	'06.07.12.	용문면 면사무소
21	3958	홍대권	홍신관	'06.07.07.	위원회조사실
22	4085	김용균	김진수	'06.10.24.	위원회조사실
23	4741	김경식	김천식	'06.10.19.	양평군청
24	5556	김인선	김각선	'07.03.21.	위원회조사실
25	5683	이재완	이영희	'07.04.05.	신청인 자택
26	6322	서기석	서정화	'07.04.04.	신청인 자택
27	6639	홍대길	홍현관	'06.11.10.	위원회 조사실
28	7040	신재천	신재필	'07.03.20.	위원회 조사실
29	7407	함민자	함재옥	'07.04.04.	양평군청 소회의실
30	7408	이순평	이석종	'07.04.04.	신청인 자택
31	8064	이호선	이병천	'07.03.30.	위원회 조사실
32	10290	이윤래	이항래	'07.04.05.	양평군청 소회의실

〈표 3〉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상황

번호	성명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주요진술내용	진술형태
1	박대식	사건생존자	'06.05.25.	양평군청	사건현장까지 가는 과정과 목격한 피해형태, 피해장소 진술	진술조서
2	박기환	피해자(마-1004, 김태형)와 같이 지서에 잡혀감	'06.06.15.	위원회조사실	용문지서 감금상황과 취조과정 진술	진술조서
3	김장근	피해자(마-1004, 김태형)동생	'06.06.14.	전화면담	희생자 시체 수습	진술조서
4	이영기	피해자(마-2194, 서금석)아들	'06.12.04.	위원회조사실	희생자 이병렬(부), 이병천(백부) 유족	진술조서
5	한현석	사건현장 시체 염습작업	'06.12.15.	위원회조사실	시체 염습과정 진술	진술조서
6	김정인	생존자였던 김범석 아들	'07.04.04.	남양주영화촬영소	김범석 체포과정과 피해장소 진술	진술조서

2. 문헌자료 조사

양평의 역사와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한국전쟁 당시 양평지역의 피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논문, 자서전, 단행본 등의 문헌자료와 양평군청, 양평문화원과 국회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에서 검색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보훈처 등 국내 기관의 소장 자료도 확인하였고, 그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⁹⁾

- RG 153(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중 KWC #33 (총 94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자료는 NARA에 소장)
-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중 피살자명부』, 1952. 3. 31. (116~123쪽)
- 『남북한관계사료집』16, (406~407쪽)
- 양평문화원, 『한국전쟁 양평전란사략』, 2005, (14쪽, 60쪽, 503~557쪽, 601쪽, 623~629쪽, 670쪽)
- 양평의향지편찬위원회, 『양평의향지』, 2002, (409~410쪽)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양평군지』상, 2005, (573~609쪽)
- 고원 허순오 저, 『고희를 맞이하여, 인생론』, 1990, (121쪽, 170~171쪽)
-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2, 1972, (445쪽)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16, 1993, (208~220쪽)
-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11, 1975, (60~62쪽)
- 하유식, 「이승만정권 초기 대한청년단의 조직과 활동」,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6, (28쪽)
- 김행복,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2002(325쪽)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135~136쪽)

3. 현장조사

본 사건과 관련하여 3차례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2006년 5월 26일 신청인 주장에 따라 양평군 양평읍 양근4리 한강 백사장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¹⁰⁾ 2006년 8월 23일 양평문화원 주최로 양평사건 피해 장소에 현장비 제막식(경기도 양평읍 양근4리 양평대교 밑)이

9) 자료 조사.

10) 피해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4리 한강변(구 경비행장 혹은 떠드령산이라고 지칭)으로, 지금 떠드령산(떠드령산의 어원은 떠내려온 섬이라는 뜻)은 팔당댐 건설 이후 물에 잠겨있는 상태로 모습이 변형된 상황이다. 사진 : 별첨2.



거행되었고, 현장비가 세워진 현장을 확인하였다.¹¹⁾ 2007년 4월 20일 참고인 김정인의 피해 장소에 관한 새로운 증언에 따라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였다.¹²⁾

IV. 진실규명 과제

양평적대세력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양평군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었던 1950년 9월 26일(음력 8월 15일) 전후 양평읍 한강변 백사장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인민군·내무서원에 의해 살상되었다는 진실규명 신청인들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얻어진 피해시기와 장소, 피해과정 및 형태 등에 관한 증언을 관련 문헌기록과 대조, 확인하고자 하였다.
- 본 사건의 피해규모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실제피해여부와 그들의 신원 및 피해이유 등을 신청인·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 사건의 가해주체를 파악하여, 사건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V. 조사 결과

1. 사건의 실제 여부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1950년 9월 22일에서 26일(음 8월 11일에서 15일)새벽 사이에 연행되었다.¹³⁾ 이 시기는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9월 15일 이후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인민군의 철수가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¹⁴⁾ 연행된 피해자들은 1차로 각 면의 지서나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9월 26일(음 8월 15일) 전후해서 양평면 내무서와 그 인근 건물(양평경찰서, 양평 내무서 옆 농협창고)에 집결되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속칭 떠드렁산)에서 수습한 시기가 국군이 양평을 수복한 10월 1일 혹은 유엔군 2군단이 들어온 10월 2일 이후였다고 신청인들은 진술하였다.¹⁵⁾ 31명의

11) 사진 : 별첨3.

12) 사진 : 별첨4.

13) 일자별 연행 인원 ; 지역별·일자별 연행 인원.

14) 한국전쟁시 미8군 전쟁범죄단 과장을 맡았던 헨리 대령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월의 학살의 84.6%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있었고, 나머지 15.4%정도만이 9월의 다른 시기에 자행되었다.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WAR CRIMES DIVISION, Entry 182, Historical report.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 사건의 시기적 분포도 이와 비슷하다.

15) 집단희생과정·경로.

신청인 중 3명(서성석, 김경식, 김인선)만이 그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체를 수습한 피해가족들은 대부분의 사체들이 부패된 상태여서 시신의 의복이나 신체적 특징을 식별하여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사체에서 총상과 화상 자국도 육안으로 관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중 사건 생존자인 박대식의 증언에 따르면 9월 23일(음력 8월 12일) 자택에서 본인도 부친, 형과 함께 연행되어 신애리 공회당을 거쳐 양평경찰서에 감금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양평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은 두 명 씩 양손을 허리띠나 철사로 묶인 채 사건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만 탈출하였고, 국군이 양평지역을 수복한 직후 사건현장인 한강변에서 부친과 형의 사체를 수습하였다고 하였다.¹⁶⁾ 또 참고인 한현석(당시 양평 중 2학년 재학 중, 16세)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이 진주한 후 학교에서 단체로 시체를 염습하여 갔었는데¹⁷⁾, 그때 남한강백사장에 널려있는 민간인 복장의 사체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¹⁸⁾

이와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10월 1일 양평에 진주한 8사단 21연대의 군수참모 소령이었던 허순오는 “적이 후퇴하면서 우익청년 650명을 학살하였고, 현장에 가보니 가족들이 시체를 부둥켜안고 통곡하였다”¹⁹⁾고 기록하며 남한강변 모래사장에서 600여명의 피살된 시신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²⁰⁾ 이는 한국전쟁사 4권²¹⁾에 8사단 21연대가 10월 양평에 입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비록 하루의 차이는 있으나 허순오의 소속부대가 그 시기에 양평에 진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KWC #33²²⁾ 자료에 의하면 UN군 제 2군단은 10월 2일 양평지역을 탈환한 후 미군

16) 06. 5. 25. 박대식 1차 진술조서 3~4쪽 ; 07. 4. 5. 박대식 2차 진술조서 2~6쪽.

17) 06. 12. 15. 한현석 진술조서 2쪽.

18) 『백운신문』 2005. 10. 21.

19)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 2』, 1972, 445쪽.

20) 허순오, 『고희를 맞이하여, 인생론』, 1990, 170~171쪽. 허순오는 현재 생존하나 디스크 수술과 치매, 노환(87세)으로 인해 거동과 진술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문서번호 조사3팀-863)

21) 국군 제8사단 21연대는 육군 작전 제199호에 의하여 제10연대와 같이 선두로 하고 제16연대를 예비대로 두고 원주-형성-용두리-양평-양수리-수유선을 따라 의정부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특히 10월 2일은 제8사단 21연대는 양평 서북쪽으로 정면 공격하였으며 10월 3일 제8사단은 양평지역에서 부대정비를 끝내고 이날 수도 서울로 진격하였다. 『한국전쟁사』4권, 1971, 128~138쪽.

22) RG 153은 미 육군 법무감실이 작성한 한국전 기간 중 전범 사건 조사철로서, 이 중 KWC #33은 양평사건(총 94쪽)을 다룬 기밀문서로 다음 내용들이 증거서류로 첨부되어 있다.

○ 1950. 10. 3. 2군단이 군사고문단장에 보낸 라디오 메시지

○ 1951. 04. 05 2군단 질레트(Gillette) 대령의 진술서

○ 1951. 03. 15 제24보병사단의 조사보고서

○ 1952 07. 23 한국경찰조서 등이 담겨져 있다.

- 제 24보병 사단의 보고서(C)에는 양평 현장 사진 7장(1951. 3. 9, 양평 CS 655507)이 첨부되어 있다



사고문단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양평지역 한강변(CS 655507 : 미국작전지도의 위치 좌표)에 약 700명이 피살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²³⁾, 이를 직접 목격한 제2군단 소속 질레트(Gillette)의 진술서에도 이러한 사실과 피해지역의 사체 사진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다.

질레트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한강변에 가서 약 700구의 불에 그을린 듯한 사체를 확인하였고, 이는 가해자들이 시체를 소각하였다고 진술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모든 사체에서 총상 또는 자상이 관찰되었고, 질레트가 현장에 가 보았을 때는 연고가 있는 시신들을 유가족들이 수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평은 한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조한 계절에 커다란 모래사장(약 1.5마일)이 형성되는데, 사체들은 바로 이 모래사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질레트 소령도 학살이 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특이한 점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51년 3월 8일 24보병사단(the 24th Infantry Divison)의 해리스(Edgar T. Harris)가 양평 근처(CS 655507 : 미국작전지도의 위치 좌표) 한강변에서 총포시설을 설치하던 중에 세 개의 거대한 무덤을 추가로 발견하였는데, 다음날 이 곳에서 약 35명의 시체가 발견되어 이를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²⁵⁾

양평지역학살사건과 관련하여 美전쟁범죄조사단의 참고인조사를 받은 김범석²⁶⁾의 증언에 따르면²⁷⁾ 1950년 9월 28일 경 16시경에 두 명의 북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어 정치보위부를 거쳐 양평 내무서에 감금되었는데, 같은 날 23시경에 약 40여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양근리에 있는 한강 둑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자정 무렵에 수감자들에 의해 직접 파진 구덩이에서 약 13명의 북한 내무서원과 북한정치보위부원들에 의한 살상행위가 시작되었으나, 본인은 간신히 탈출하였다고 한다. 김범석에 의하면 1950년 9월 29일에도 비슷한 피해가

- 한국경찰조사서(D)에는 한국경찰 보고서('52.07.23, 남한 내무부에서 주한미8군 전쟁범죄단장에게 보낸 서신), 사건 관련 생존자 김범석(Kim Bum Suk, '52.05.31 면담)의 진술서, 관련자 이정용(Lee Jong Yong, 면장, '52.5.31 면담)의 진술서, 관련자 박수창(Pak Su Chang/'52.6.14 면담)의 진술서, 자필로 그려진 현장지도,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진 338명의 명단(주소, 성별, 성명, 연령, 소속) 등이 있다.

23) KWC #33 원본 : 별첨 5.

24) 증거자료 B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진술서는 1951년 4월 5일에 작성된 것이다. KWC #33 원본 : 별첨 6.

25) 증거자료 C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진이 7장 첨부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1951년 3월 15일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체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KWC #33 원본 : 별첨 7.

26) 진술서 내에 김범석의 신원이 나와 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창대리, 나이 33세, 직업 농업, 대한청년단 부단장으로 사회활동을 하였다.

27) 주한 미8군 전쟁범죄단(War Crimes Section)의 요구에 따라 내무부 지시로 경기도 경찰청이 양평사건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52년 7월 23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증거 자료 D로 분류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사건 생존자인 김범석의 증언이 있다. KWC#33 원본 : 별첨 8.

있었고, 양평지역을 거쳐 북으로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1950년 9월 26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600여명의 애국자들이 피해당했다고 한다. 1950년 10월 1일 UN군이 양평에 진주한 후 유가족들이 피살지에서 시신들을 수습했다고 하며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 미 전쟁범죄 조사단이 1950년 10월 20일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일어난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을 조사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던 중 유상천(Yu Sang Chun, 당시 이천면장)이 인접지역인 양평지역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인민군에 의해 피해당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당시 양평면 부면장이었던 고기환(Ko Kie Hwan)을 면담한 결과, 1950년 9월 말경 양평면에서 많은 민간인들(우익정당원과 지역 공무원 대다수)이 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그 중 125명이 1950년 9월 20-27일 사이에 희생당했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기환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군이 퇴각한 후 한강변에서 본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125명의 양평면 출신 피해자들의 사체를 수습했으며, 이는 한강변에서 발견된 약 600여구의 시체 중 일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조사철에는 양평면 출신 피해자 125명의 명단이 기록으로 남겨져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면사무소직원의 진술도 기록되어있다.²⁸⁾

위에 사실을 종합하면 1950년 9월 말경 양평군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CS 655507 : 미국 작전지도의 위치 좌표)에서 인민군과 내무서원에 의한 대규모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모든 증언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규모 및 피해자 신원

가. 피해규모

본 사건의 피해규모는 『양평지역 피살자 명부』²⁹⁾와 NARA RG 153 중 KWC #33에 첨부되어 있는 338명의 피살자 명부,³⁰⁾ 그리고 신청인·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 방법은 신청인·참고인 진술 상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을 앞의 두 문헌 자료에서 확인하고, 자료에서 확인 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는 신청인·참고인의 증언이 일치하고, 인우 보증, 시신 수습여부, 당시 거주지 확인, 제적·호적등본상 사망날짜, 제삿날 등을 비교분석하여

28) RG 153, KWC #1667. : 별첨 9.

29)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31일에 작성한 『피살자 명부』에 양평지역 피살자 337명의 명부가 있다. 명부는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8개 항목의 피살자 신원이 기록되어있다.

30) 실제로는 약 700구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된 338명의 명단만 기록되어있다. :The police estimate that a total of about seven hundred (700) persons were executed, of whom three hundred and thirty-eight(338) have been definitely identified and are listed on a roster forwarded to this office by the ROK National Police.(KWC #33)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피해자는 강하면 1명, 옥천면 8명, 용문면 13명, 양평읍 43명, 단월면 8명, 지제면 1명, 총 74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확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표 4〉 신청인·참고인 진술에 의해 확인된 피해자

지 역	피 해 자	인 원
강 하면	강응수	1명
옥 천 면	김복현, 김영원, 김시현, 김진수, 김득수, 김문수, 한영석, 함재욱	8명
용 문 면	김재근, 조의상, 조준호, 조한무, 조한중, 조한준, 한동구, 양재호, 김천식, 신재필, 서정인, 김창복, 최재의	13명
양 평 면	서정길, 서정익, 서정화, 이만기, 이병천, 이석중, 이영희, 이재성, 유몽렬, 이병준, 한준교, 이병렬, 조성구, 조성만, 조인희, 권혁준, 조성준, 이재덕, 조진원, 이봉춘, 조성원(행불), 조성옥, 흥신관, 흥현관, 박영철, 박원식, 이종만, 이수재, 이재봉, 이길수, 김영집, 정문섭, 이태영, 김동진, 이종구, 이흥재, 이종하, 이역수, 이명수, 이선재, 유창희, 남창우, 이현수	43명
단 월 면	김각선(행불), 라수경, 이지훈(행불), 이지묵(행불), 김동욱, 한동익, 신상진, 최재수	8명
지 제 면	이향래	1명

※ 본 사건의 진실규명 대상자인 경우 진하게 처리함.

※ 나머지는 신청인·참고인이 진술한 피해자.

우선 이들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대상자 32명을 『양평지역 피살자 명부』와 KWC #33에서 확보된 있는 피살자 명부와 대조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두 자료에 나타난 진실규명 대상자의 신원 기록

번호	지 역	피 해 자 (출생년도)	피학살자명부	KWC #33	특이한 사항
1	강하면 전수리	강응수(1925)	남, 26, 농업, 강하면 성덕리, 쪽12쪽, 31)	남, 26, 한청, 성덕리, 18쪽	
2	용문면 다문리	김재근(1925)	×	×	

번호	지역	피해자 (출생년도)	피학살자명부	KWC #33	특이한 사항
3	옥천면 신복리	김복현(1898)	×	×	
4	옥천면 신복리	김영원(1886)	×	×	
5	옥천면 신복리	김문수(1910)	×	×	
6	양평면 도곡리	徐廷吉(1907)	남, 49, 농업, 양평면 도곡리, 121쪽.	徐延吉, 남, 49, 한청, 도곡리, 7쪽	서연길로 기재
7	양평면 도곡리	서정익(1908)	남, 44, 공무원, 양평면 도곡리, 121쪽.	서연익, 남, 44, 양평군수, 도곡리, 18쪽	서연익으로 기재
8	옥천면 신복리	김득수(1928)	×	×	
9	양평면 도곡리	조성만	남, 46, 농업, 양평면 도곡리, 120쪽.	남, 46, 한청, 도곡리, 7쪽	
10	양평면 도곡리	조인희	趙麟然, 남, 25, 농업, 도곡리, 120쪽.	趙麟熙, 남, 25, 한청, 도곡리, 7쪽	조인연으로 기재
11	양평면 도곡리	조성준	남, 38, 농업, 양평면 도곡리, 120쪽.	남, 38, 한청, 도곡리, 8쪽	
12	옥천면 신복리	한영석(1907)	×	×	
13	용문면 덕촌리	조한무(1926)	趙漢武, 남, 25, 농업, 용문면 덕촌리, 120쪽.	趙陷武, 남, 25, 한청, 덕촌리, 16쪽	조함무로 기재
14	용문면 덕촌리	한동규(1929)	한동규, 남, 23, 농업, 용문면 덕촌리, 121쪽	한동규, 남, 23, 한청, 덕촌리, 16쪽	한동규로 기재
15	용문면 덕촌리	조한준(1910)	趙漢俊, 남, 41, 농업, 용문면 덕촌리, 120쪽	趙陷俊, 남, 41, 한청, 덕촌리, 16쪽	조함준으로 기재
16	용문면 덕촌리	조의상(1914)	趙宣相, 남, 37, 농업, 용문면 덕촌리, 쪽120	조선상, 남, 37, 한청, 덕촌리, 16쪽	조선상으로 기재
17	용문면 삼성리	양재호	×	×	
18	양평면 양근리	조성원(1913)	×	×	행불자로 신청
19	양평면 원덕리	조성옥(1916)	남, 35, 농업, 양평면 원덕리, 120쪽	남, 35, 한청, 원덕리, 6쪽	
20	용문면 덕촌리	조준호(1906)	남, 47, 농업, 용문면 덕촌리, 120쪽	남, 47, 한청, 덕촌리, 16쪽	
21	양평면 공흥리	홍신관(1905)	남, 50, 농업, 양평면 공흥리, 122쪽	남, 50, 한청, 공흥리, 4쪽	



번호	지역	피해자 (출생년도)	피학살자명부	KWC #33	특이한 사항
22	옥천면 신복리	김진수(1907)	×	×	
23	용문면 연수리	김천식(1923)	×	×	
24	단월면 봉상리	김각선(1924)	남, 27, 경찰, 단월면 봉상리, 117쪽	남, 27, 양평서, 봉상리, 20쪽	행불자로 신청
25	양평면 회현리	이영희(1914)	남, 35, 농업, 양평면 회현리, 118쪽	남, 35, 한청, 회현리, 6쪽	
26	양평면 도곡리	서정화(1911)	서정화, 남, 41, 공무원 양평면 도곡리, 121쪽	서연화, 남, 41, 면사무소, 도곡리, 19쪽	
27	양평면 공흥리	홍현관(1918)	남, 32, 농업, 양평면 공흥리, 122쪽	남, 32, 한청, 공흥리, 4쪽	
28	용문면 화전리	신재필(28세)	남, 30, 농업, 용문면 화전리, 122쪽	남, 30, 한청, 화전리, 14쪽	
29	옥천면 옥천리	함재옥(1917)	×	×	
30	양평면 공흥리	이석중(1911)	×	×	
31	양평면 공흥리	이병천(1897)	남, 58, 농업, 양평면 공흥리, 119쪽	남, 58, 無, 공흥리, 22쪽	
32	지제면 지평리	이향래(1928)	×	×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³²⁾는 인우 보증, 시신 수습여부, 당시 거주지 확인, 공문서상 제적·호적등본상 사망날짜, 제삿날 등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

- 강응수는 신청인 진술과 피살자명부 122쪽, KWC #33 18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하였다.
- 김재근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부인(변명복)과 동생(김장근, 당시 21세)이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에서 직접 시신을 수습했다는 증언³³⁾을 확보하였다.
- 김복현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느리와 머슴이 시신을 수습했고³⁴⁾, 제적등본 상 1950. 9. 30일 오후 7시 양평군 양평면

31) 해당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32) 특히 미군자료(KWC #33)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약 700여 명 중 338명의 신원이 확인되어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이 부분의 피해사실 확인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참고인 김장근 진술조서, 2쪽.

양근리 강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김영원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과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하고³⁵⁾, 제적등본 상 1950. 9. 19일 오전 7시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 강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김문수는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옷을 보고 시신을 수습³⁶⁾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서정길은 피살자 명부 121쪽과 KWC #33 7쪽에 서연길(徐延吉)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자, 49세, 양평면 도곡리가 본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자료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³⁷⁾ 비록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지만 제적등본 상 1950. 9. 12일 양근리 강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서정익은 피살자 명부 121쪽과 KWC #33 18쪽에 서연익(徐延益)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자, 44, 공무원(양평군수), 양평면 도곡리가 본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³⁸⁾하였고, 제적등본 상 1950. 9. 25일 양근리 강변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김득수는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과 어머니가 직접 시신을 수습했다는 증언³⁹⁾을 확보하였다.
- 조성만은 피살자명부 120쪽과 KWC #33, 7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조인희는 피살자명부 120쪽에 조인연(趙麟然)으로 기재되어 있고, KWC #33 7쪽에는 조인희(趙麟熙)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두 자료 모두 신원은 남, 25세, 양평면 도곡리가 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과 아버지, 형수와 같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⁴⁰⁾
- 조성준은 피살자명부 120쪽과 KWC #33 7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하므로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 한영석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이 시신을 수습⁴¹⁾하였고, 신청인이 사망일자로 1950. 9. 20일로 신고⁴²⁾하였다.

34) 신청인 김영의 진술조서, 3~4쪽.

35) 신청인 김향수 진술조서, 3쪽.

36) 신청인 김용태 진술조서, 4쪽.

37) 자료상 정(廷)자가 연(延)로 기재되었으나, 동일한 오기가 다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廷)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38) 신청인 서궁석 진술조서, 5쪽.

39) 신청인 김명수 진술조서, 10쪽.

40) 신청인 조흥희 진술조서, 8쪽.



- 조한무는 피살자명부 120쪽에 조한무(趙漢武)로 기재되어있으며, KWC #33 16쪽에 조합무(趙陷武)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 25, 용문면 덕촌리가 본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KWC #33 16쪽에 한(漢)자가 함(陷)자로 기재되었으나 동일한 현상이 다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한(漢)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자의 기일을 음력 8월 13일로 정하고 있다.
- 한동구(韓東龜)는 피살자명부 121쪽과 KWC #33 16쪽에 한동구(韓東奎)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자, 23세, 용문면 덕촌리가 본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이 시신을 수습⁴³⁾하였다고 한다.
- 조한준은 피살자명부 120쪽에 조한준(趙漢俊)으로, KWC #33 16쪽에 조합준(趙陷俊)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 41, 용문면 덕촌리가 본적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과 어머니가 직접 시신을 수습⁴⁴⁾하였다고 한다.
- 조의상은 유가족들의 협조 요청 거부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 양재호는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양복석)가 시신을 직접 수습⁴⁵⁾하였다고 한다.
- 조성완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없고, 피해장소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 조성옥은 피살자명부 120쪽과 KWC #33 6쪽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자료상 기재된 신원이 남자, 35, 양평면 월덕리가 본적으로 신청인 진술과 일치하므로 동일인물로 파악된다. 또한 피해 장소에서 신청인과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하였고⁴⁶⁾, 제적등본 상 1950. 9. 25 사망한 것으로 신고 되어있다.
- 조준호는 피살자명부 120쪽과 KWC #33 16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홍신관은 피살자명부 122쪽과 KWC #33 4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김진수는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하였고⁴⁷⁾, 제적등본은 전쟁 중에 소실하였기에 나중에 1951년 3월 10일

41) 신청인 한천석 진술조서, 8쪽.

42) 신청인 한천석 진술조서, 10쪽.

43) 신청인 한동하 진술조서, 6쪽.

44) 신청인 조문상 진술조서, 4쪽.

45) 신청인 양승무 진술조서, 5쪽, 신청인 진술시 양복석이 동석하여 증언하였다.

46) 신청인 조민희 진술조서, 4쪽.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일은 음력 8월 15일로 정하여 지내고 있다.

- 김천식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기록이 없고, 피해 장소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 김각선은 비록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⁴⁸⁾, 피살자명부 117쪽과 KWC #33 20쪽에 이름과 신원이 기록되어 있다.
- 이영희는 피살자명부 118쪽과 KWC #33 6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서정화는 피살자명부 121쪽과 KWC #33 19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홍현관은 피살자명부 122쪽과 KWC #33 4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신재필은 피살자명부 122쪽과 KWC #33 14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함재옥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⁴⁹⁾하였고, 제적등본 상 음력 8.16일 양평군 양평면 양근리에서 학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석중은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장소에서 어머니와 형부가 시신을 수습⁵⁰⁾하였고, 음력 8.12일을 기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 이병천은 피살자명부 119쪽과 KWC #33 22쪽에 이름과 신원이 일치한다.
- 이향래는 피살자명부와 KWC #33에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피해 장소에서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⁵¹⁾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제적등본이 소실되어 다시 제적등본을 만들 때에 죽은 사람(이향래)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⁵²⁾

이상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정리하면 신청인 가운데 32명 조의상, 조성완, 김천식, 이향래는 신청인진술에 따른 구체적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28명은 피해자로 등재되어 있는 문헌자료와 제적등본이 확보되었다.

47) 신청인 김용균 진술조서, 3쪽.

48) 신청인 김인선 진술조서, 5쪽, 식구들이 여러 차례 시신을 찾았지만 못찾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행복자로 신청하였다.

49) 신청인 함민자 진술조서, 3쪽, 옷과 핵대를 보고 시신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50) 신청인 이순평 진술조서, 3쪽, 시신은 깨끗하고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51) 신청인 이운래 진술조서, 3쪽, 시신은 타서 알아보기 못하고 속옷을 보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2) 제적등본 상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 전쟁 당시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진술(신청인 이운래 진술조서, 2쪽)에 따라 피해자(이향래)의 직업이 의정부 교도소 교도관인지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전쟁 전에 의정부 형무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p.468 건국 당시의 형무소 및 형무소 지소는 서울, 마포,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전주, 공주, 춘천, 청주, 마산, 목포, 안동, 진주, 마산형무소(15개 형무소)와 개성, 인천, 김천소년형무소(3개 소년형무소) 및 광주형무소소록도지소이다.



다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42명을 피살자명부와 KWC #33 명부와 대조·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비신청자 중 신청인·참고인 진술에 의해 확인된 신원 기록

번호	피해자	피 살 자 명 부	KWC #33	진 술 조 서
1	김시현	×	×	신청인 김용태(옥천면), 4쪽
2	조한중	남, 59, 교원, 용문면 금곡리, 120쪽	남, 59, 교원, 용문면 금곡리, 20쪽	신청인 한동해(용문면), 8쪽
3	서정인	×	×	참고인 신경진(용문면), 2쪽
4	김창복	김창복, 36, 농업, 용문면 화전리, 117쪽	김창복, 36, 한청, 용문면 화전리, 14쪽	참고인 신경진(용문면), 2쪽
5	최재의	남, 45, 정미업, 용문면 화전리, 120쪽	남, 45, 한청, 화전리, 14쪽	참고인 신경진(용문면), 2쪽
6	이만기 (李萬基)	남, 24, 농업, 양평면 도곡리, 119쪽	남, 24, 한청, 도곡리, 7쪽	신청인 서공석(도곡리), 3쪽
7	이재성	남, 39, 농업, 양평면회현리, 119쪽	남, 39, 한청, 회현리, 6쪽	참고인 이중희(회현리), 5쪽
8	유몽렬	×	×	참고인 이중희(회현리), 5쪽
9	이병준	남, 33, 농업, 양평면회현리, 119쪽	남, 33, 한청, 회현리, 7쪽	참고인 이중희(회현리), 3쪽
10	한중교	한중교, 35, 농업, 양평면 회현리, 121쪽	한중교, 35, 한청, 회현리, 6쪽	참고인 이중희(회현리), 2쪽
11	이병렬	남, 38, 농업, 양평면 도곡리, 119쪽	남, 38, 한청, 도곡리, 7쪽	참고인 이영기(도곡리), 1쪽
12	조성구	남, 48, 공무원, 양평면 도곡리, 120쪽	남, 48, 면사무소, 도곡리, 19쪽	신청인 서공석(도곡리), 3쪽
13	권혁준	×	×	신청인 서성석(도곡리), 3쪽

번호	피해자	피 살 자 명 부	KWC #33	진 술 조 서
14	이재덕	×	×	신청인 조찬희(도곡리), 3쪽
15	조진원	남, 38, 농업, 양평면 도곡리, 120쪽	남, 38, 한청, 도곡리, 8쪽	신청인 조찬희(도곡리), 3쪽
16	이봉춘	남, 39, 농업, 양평면 도곡리, 119쪽	남, 39, 한청, 도곡리, 8쪽	신청인 조찬희(도곡리), 3쪽
17	박영철	남, 59,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9쪽	남, 59, 국민회, 신애리, 1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18	박원식	남, 37, 농업, 양평면신애리, 119 쪽	남, 37, 한청, 신애리, 3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19	이종만	남, 55, 농업, 양평면신애리, 117쪽	남, 55, 국민회, 신애리, 2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0	이수재	남, 52,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8쪽	×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1	이재봉	남, 41, 농업, 양평면 봉상리, 118쪽	남, 41, 한청, 봉상리, 6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2	이길수	남, 45,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45, 국민회, 신애리, 1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3	김영집	남, 67, 의사, 양평면 양근리, 116쪽	남, 67, 대한민국민당, 신애리, 1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4	정문섭	남, 24, 농업, 양평면 신애리, 121쪽	정육섭, 남, 24, 한청, 신애리, 3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5	이태영	남, 26, 공무원,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26, 양평면 면사무소, 신애리, 18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6	김동진	남, 41, 농업, 양평면 양근리, 116쪽	남, 41, 대한민국민당, 신애리, 1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술조서, 2쪽
27	이종구	남, 27,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27, 한청, 신애리, 3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8	이흥재	남, 50,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50, 국민회, 신애리, 1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29	이종하	남, 35, 농업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35, 無, 신애리, 22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번호	피해자	피 살 자 명 부	KWC #33	진 술 조 서
30	이억수	李億洗, 29, 공무원, 양평면 신애리, 117쪽	李億求, 29, 양평면 면사무소, 신애리, 18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1	이명수	남, 45, 공무원,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45, 철도국원, 신애리, 20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2	이선재	남, 43,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7쪽	남, 43, 국민회, 신애리, 2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3	유창희	×	×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4	남창우	남, 40, 농업, 양평면 신애리, 123쪽	남, 40, 신애리, 22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5	이현수	남, 43, 농업, 양평면 신애리, 117쪽		참고인 박대식(신애리), 2차 진술조서, 2쪽
36	나수경	남, 29, 음식점, 단월면 보룡리, 122쪽	남, 29, 한청, 보룡리, 9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2쪽
37	이지훈	남, 42, 경찰, 단월면 보룡리, 118쪽	남, 42, 양평서, 보룡리, 20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2쪽
38	이지묵	남, 58, 공무원, 단월면 덕수리, 118쪽	남, 58, 면사무소, 덕수리, 19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2쪽
39	김동욱	×	×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3쪽
40	한동익	남, 35, 농업, 단월면 보룡리, 121쪽	남, 35, 한청, 보룡리, 9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2쪽
41	신상진	남, 27, 농업, 단월면 봉상리, 122쪽	남, 27, 한청, 봉상리, 10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2쪽
42	최재수	남, 37, 정미업, 단월면 봉상리, 120쪽	남, 37, 한청, 봉상리, 10쪽	신청인 김인선(단월면), 2차 진술조서, 3쪽

이상의 조사 및 확인 결과, 42명 중 자료상 나타나지 않는 7명을 제외하면 2명은 한 자료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3명은 증언과 자료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진실규명 대상자 32명 중 확인된 피해자 28명의 피해사실을 문헌자료에서 확인하였고, 비록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33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통해 총 61명에 대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 신원

본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된 61명의 신원⁵³⁾은 다음과 같다.(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경우는 어둡게 처리)

〈표 7〉 피해자의 주요 인적사항

번호	피해자	성별	나이 ⁵⁴⁾	지 역	직 업 및 경 력		
					진술내용	피살자명부	KWC #33
1	강응수 (姜鷹秀)	남	26	강하면	면사무소 호적담당 주사(공무원)	농업	대한청년단원
2	김재근 (金載根)	남	26	용문면	청량리 하역 경비/한청		
3	김복현 (金福鉉)	남	53	옥천면	농사		
4	김영원 (金永源)	남	56	옥천면	농사		
5	김문수 (金文洙)	남	41	옥천면	서울공고 서무과 행정		
6	서정길 (徐廷吉)	남	44	양평면	농사	농업	대한청년단원
7	서정익 (徐廷益)	남	43	양평면	양평군청 회계 공무원	공무원	양평군수
8	김득수 (金得洙)	남	23	옥천면	농사/한청		
9	趙성만	남	46	양평면	농사/한청단장	농업	대한청년단원
10	조인희 (趙麟熙)	남	25	양평면	농사/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1	조성준 (趙誠俊)	남	38	양평면	구장, 농사/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2	한영석 (韓永錫)	남	44	옥천면	농사		
13	조한무 (趙韓武)	남	25	용문면	농사/한청단장	농업	대한청년단원

53) 신청인·참고인이 진술한 피해자의 경우는 피살자 명부, KWC #33에 기재된 신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번호	피해자	성별	나이 ⁵⁴⁾	지역	직업 및 경력		
					진술내용	피살자명부	KWC #33
14	한동규 (韓東奎)	남	22	용문면	농사/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5	조한준 (趙韓駿)	남	41	용문면	반장/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6	양재호	남	47	용문면	구장, 농사		
17	조성옥	남	35	양평면	운송업/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8	조준호	남	45	용문면	반장, 농사/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19	홍신관 (洪信觀)	남	46	양평면	이장, 농사	농업	대한청년단원
20	김진수	남	44	옥천면	농업/목상		
21	김각선	남	27	단월면	경찰	경찰	양평서 경찰
22	이영희	남	35	양평면	반장/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23	서정화	남	40	양평면	면사무소 호적계장	공무원	면사무소
24	홍현관	남	33	양평면	농업/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25	신재필	남	30	용문면	전차운전수/한청	농업	대한청년단원
26	함재옥	남	34	옥천면	농업		
27	이석중	남	40	양평면	농업/구장		
28	이병천	남	54	양평면	양평면장	농업	無
29	조한중	남	59	용문면		교원	교원
30	김창복	남	36	용문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1	최재의	남	45	용문면		정미업	대한청년단원
32	이만기	남	24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3	이재성	남	39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4	이병준	남	33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5	한준교	남	35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6	이병렬	남	38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7	조성구	남	48	양평면		공무원	면사무소

번호	피해자	성별	나이 ⁵⁴⁾	지 역	직 업 및 경 력		
					진술내용	피살자명부	KWC #33
38	조진원	남	38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39	이봉춘	남	39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40	박영철	남	59	양평면		농업	국민회
41	박원식	남	37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42	이종만	남	55	양평면		농업	국민회
43	이재봉	남	41	양평면	농사	농업	대한청년단원
44	이길수	남	45	양평면		농업	국민회
45	김영집	남	67	양평면	약방	의사	대한국민당
46	정문섭	남	24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47	이태영	남	26	양평면		공무원	양평면사무소
48	김동진	남	41	양평면		농업	대한국민당
49	이종구	남	27	양평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50	이흥재	남	50	양평면		농업	국민회
51	이종하	남	35	양평면		농업	無
52	이억수	남	29	양평면		공무원	양평면사무소
53	이명수	남	45	양평면	기차역장	공무원	철도국원
54	이선재	남	43	양평면		농업	국민회
55	남창우	남	40	양평면		농업	無
56	나수경	남	29	단월면		음식점	대한청년단원
57	이지훈	남	42	단월면		경찰	양평서
58	이지묵	남	58	단월면		공무원	면사무소
59	한동익	남	35	단월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60	신상진	남	27	단월면		농업	대한청년단원
61	최재수	남	37	단월면		정미업	대한청년단원

54) 제적등본상 사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는 자료(피살자명부, KWC #33)를 인용하였다.



이상의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고, 연령별로는 20대 14명, 30대 17명, 40대 21명, 50대 8명, 60대가 1명으로, 20~40대가 주(主) 피해 대상자였다. 피해 당시 농업에 종사했던 자가 가장 많고(43명), 공무원(12명), 상업종사(3명), 기타(3명)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활동으로는 대한청년단⁵⁵⁾ 활동을 했던 자가 31명이고, 국민회⁵⁶⁾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5명이고, 대한국민당⁵⁷⁾에서 활동 했던 자도 2명이 있었다.

〈표 8〉 확인된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

지 역	강하면	용문면	옥천면	양평면	단월면	계
피해자 수	1	10	7	36	7	61
비율(%)	2%	17%	11%	59%	11%	100%

〈표 9〉 확인된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연 령 대	20	30	40	50	60	계
피해자 수	14	17	21	8	1	61
비율(%)	23%	28%	34%	13%	2%	100%

〈표 10〉 확인된 피해자의 직업별 분포

직업별	농 업	공무원	상 업	기 타	계
피해자 수	43	12	3	3	61
비율(%)	70%	20%	5%	5%	100%

55) 대한청년단은 1948년 12월 19일 해방 이후 존속되어온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독청, 국청, 총청 등 그 밖에 군소 청년단체를 규합하여 창설되었다. 『평화일보』, 1948. 12. 21, '청년단체 통합으로 대한청년단 발족', 당시 신성모 대한청년단 단장이 "이 청년단의 사업계획안에는 주로 도로수선과 식목 등의 각종 민간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요한 임무는 防共이다"라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48. 12. 29.

56)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약칭으로, 기존의 반탁운동기관인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 중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 통합하여 만들어진 우익진영의 대표적 대중조직이다. 오유석, 『한국보수지배세력연구』, 『사회와 역사』제45권, 1995. 12, 168~169쪽.

57) 정부수립 후 이승만이 대중단체인 국민회를 기반으로 여당 성격을 띤 대한국민당을 결성하였다. 김수자, 「이승만의 여당 결성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제31집, 2004. 12, 204~244쪽.

다. 피해 이유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본 사건에 관한 미군 전쟁범죄조사단의 보고서 (KWC #33), 공보처에서 1952년에 발행한 『6.25피학살자명부』 및 관련 연구문헌을 종합해 판단할 때, 피해의 주된 이유는 가해자인 인민군과 내무서원들이 이들 피해자가 국군에 협력했거나 후에 UN군과 국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는 첫째, 이 사건이 북한 정치보위부에 의해 UN군과 국군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직후에 발생한 점이다.⁵⁸⁾ UN군의 대거참전으로 전황이 인민군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9월 중순 각 지방당에 다음과 같은 지시가 전달되었다. (1)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한다. (2)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하라. (3) 유엔군 상륙 때 지주(支柱)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4)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파괴하라. (5) 산간지대 부락을 접수하여 식량을 비축하라. (6) 입산경험자 및 입산활동이 가능한 자는 입산시키고 기타 간부들은 일시 남강원도까지 후퇴케 하라.⁵⁹⁾

둘째,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우익단체원, 혹은 부농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인민군의 후퇴시기에 인민군 및 내무서원 등에 의한 유사한 집단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북한 정치보위부의 지령에 의해 UN군 및 국군의 잠재적인 지원세력을 제거할 목적에서 인민군 및 내무서원 등이 저지른 무수한 집단희생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점령세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하던 시기에는 연행되어 온 주민들에 대해 죄질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근거하여 즉결처분, 인민재판 회부, 훈방 등 다양한 처분을 내렸지만, 후퇴를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노동당과 인민군전선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무차별적인 집단학살이 저질러졌다고 추정된다.

3. 가해 주체

신청인·참고인은 사건 발생시기가 인민군이 양평군을 점령했던 시기이고, 피해자를 연행한 자들이 내무서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들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KWC #33 자료도 가해자로 북한인민군, 북로당원,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의 증언이 없으며⁶⁰⁾ 자료의 내용도

58) 실제 지방단위의 지령을 전달한 것은 북한 정치보위부 산하 정치공작대원이었다. 대검찰청 조사국, 『죄의사건실록』 11권, 1975, 61~63쪽.

59)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454~455쪽.

60) 가해행위를 연행·감금 등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도 확보하였으나, 여기서는 (가해행위를) 학살행위



사건 발생 후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로의 특정인을 거명하거나 그(들)의 정확한 소속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⁶¹⁾

VI. 결론

1)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1950년 9월 22일에서 26일 새벽사이 연행되어 1차로 각 면의 지서나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9월 26일을 전후해서 양평면 내무서와 그 인근 건물(양평경찰서, 양평 내무서 옆 농협창고)에 집결되었다.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들은 두 명씩 양손을 허리띠나 철사로 묶어서 사건 현장인 양평면 양근4리 한강변 백사장으로 끌려간 후 총살되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국군이 양평을 수복한 10월 1일 이후에 유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2) 조사결과, 진술과 문헌에서 확인한 희생자 중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대상자는 강응수(마-36), 김재근(마-1004), 김복현(마-1284), 김영원(마-1285), 김문수(마-1528), 서정길(마-1957), 서정익(마-2194), 김득수(마-2255), 조성만(마-2256), 조인희(마-2759), 조성준(마-2780), 한영석(마-2787), 조한무(마-3436), 한동규(마-3437), 조한준(마-3438), 양재호(마-3665), 조성옥(마-3746), 조준호(마-3841), 홍신관(마-3968), 김진수(마-4085), 김각선(마-5556), 이영희(마-5683), 서정화(마-6322), 홍현관(마-6639), 신재필(마-7040), 함재옥(마-7407), 이석중(마-7408), 이병천(마-8064) 등 28명이며,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로는 조한중, 김창복, 최재의, 이만기, 이재성, 이병준, 한준교, 이병렬, 조성구, 조진원, 이봉춘, 박영철, 박원식, 이종만, 이재봉, 이길수, 김영집, 정문섭, 이태영, 김동진, 이종구, 이홍재, 이종하, 이억수, 이명수, 이선재, 남창우, 나수경, 이지훈, 이지묵, 한동익, 신상진, 최재수 등 33명이 확인되었다.

3) 확인된 희생자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용문면, 옥천면, 강하면, 단월면 마을 주민들이다. 모두 남성이고, 20~4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회와 대한국민당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도 7명이 있었다.

4) 피해의 주된 이유는 희생자들이 UN군과 국군에 협력했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학살이 북한 정치보위부에 의해 UN군과 국군의 지원세력이

로만 한정되었다.

61) 1950년 9월 20일 인민군전선사령관 김책이 무전으로 유엔군과 국군에 협력자와 그 가족을 살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으나(윤장호저, 『호국경찰전사』, 1995, 도서출판 제일, 151~153쪽.) 실제 양평지역 내 피해자들이 유엔군과 국군에 협력자인지는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직후에 발생한 점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 대부분이 공무원, 우익단체원, 혹은 부농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5) 가해주체는 신청인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인민군, 내무서원이 지목되고 있으나, 가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의 증언이 없으며, 자료상의 내용도 사건 발생 후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그(들)의 군적 또는 기관소속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 별첨 1

6·25피학살자 위령탑



6.25 피학살자 위령탑(양평읍 양근리 갈산 공원내)

위령탑에 ‘호국영령 되시어 조국 품에 영원하소서’ 새겨져 있으며 위령비에는 ‘6·25 피학살 현장’ 제목 하에 이곳으로부터 1킬로미터 떨어진 양평초등학교 앞 강변은 1950년 9월 하순 양평지역 반공인사 600여명이 북한 공산도당에 의하여 집단학살 당한 원통한 현장입니다.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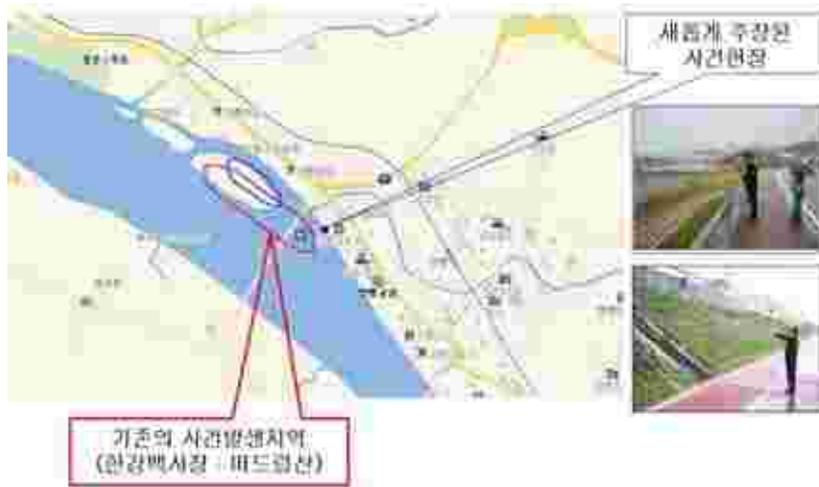


별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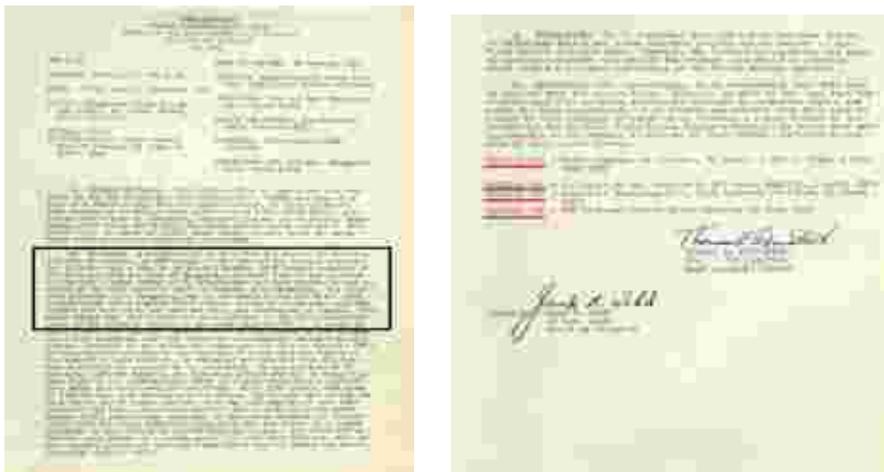




별첨 4



별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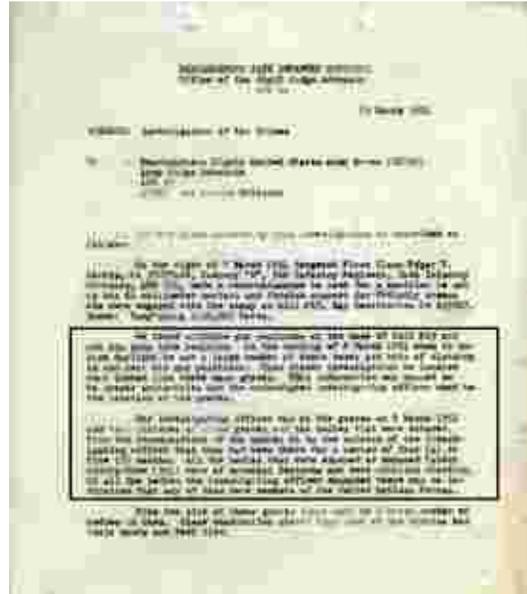
2. 분석

2군단 질레트대령의 진술에 의하면 1950년 10월 2일이거나 그쯤에...양평지역에 진입하였는데...질레트대령이 양평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양평지역을 퇴각하는 북한 인민군들이 다수의 유엔 동조자들을 모아두고 처형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 남성들인 700여명의 시체들이 한강변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 모두 총에 맞았고, 대부분 창에 찔리거나 불에 탔었다...(증거자료 "B")

별첨 6



별첨 7



별첨 8





◆ 별첨 9

